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4일 박찬원 의원이 발의하였고, 2019년 1월 21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호적법 폐지('08.1.1.)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운영되고 있음에도 호적법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수정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출서류 항목 신설(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현행은 사망의 경우, 증명서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 되었을 때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사망사실이 정리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호적법상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 “호적상”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다.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

라. 보상심의회 간사의 담당직위 현행화(안 제6조제1항)

- “정책기획담당주사” → “기획담당”

마.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2008년 호적법 폐지이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호적법상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수정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출서류 항목의 신설과 정비, 약칭·띄어쓰기 정비, 보상심의회 간사의 담당직위 현행화, 조문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이 주요내용으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435호, 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제3조~제7조 (생략)

제8조(다른법률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제836조제1항·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⑮ (생략)